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09.6.1.		16		
2	2012.12.21.		17		
3	2013.4.22.		18		
4	2014.4.22.		19		
5	2017.3.1.		20		
6	2025.8.13.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2., 2009.6.1., 2017.3.1.>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내외의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입학처장, 교무처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 각 학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25.8.13.>

③ 임명직 위원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4.4.22.,2017.3.1>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14.4.22.>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 전형관리 기술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4. 대학입학 정보개발과 홍보전략에 관한 사항
5. 대학별고사 출제에 관한 사항<신설 2007.3.12>
6. 기타 대학입학 전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의2 (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제4조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활동을 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9.6.1>

② 자문위원의 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6.1>

③ 삭제<2009.6.1>

[본조신설 2007.3.12]

제4조의3 (소위원회) 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문개정 2009.6.1>

[본조신설 2007.3.12]

제5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및 간사)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입학관리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입학연구·평가위원회 규정에서 입학위원회 규정으로 규정명을 개정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 입학위원회 규정에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변경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